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목 차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 제2조 적용범위
- 제3조 정의
- 제4조 안전보건표지
- 제5조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 제6조 도급의 승인
- 제7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2장 안전보건 관리 조직과 그 직무

- 제8조 조직의 구성
- 제9조 안전보건관리 체제
- 제10조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등
- 제11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제12조 관리감독자
- 제13조 안전관리자
- 제14조 보건관리자
- 제15조 안전보건관리조직
- 제16조 작업지휘자
- 제17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 제18조 회의 등
- 제19조 심의사항
- 제20조 회의록
- 제21조 회의결과 등의 주지

제3장 안전보건교육

- 제22조 교육의 구분
- 제23조 교육계획수립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제24조 정기교육

제25조 채용시 및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제26조 특별안전보건교육

제2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제28조 교육강사

제29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제30조 교육주기

제4장 안전관리

제31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제32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제33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제34조 방호조치

제35조 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제36조 안전검사

제37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38조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제39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제40조 안전수칙

제41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제42조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제43조 안전보건표지·안전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5장 보건관리

제44조 일반건강진단

제45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제46조 특수건강진단 등

제47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제48조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제49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제50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제51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제52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제53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제54조 작업환경측정
제55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제56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제57조 작업환경측정 방법
제58조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제59조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제60조 보호구의 지급 등
제61조 보호구의 관리
제62조 전용보호구 등
제63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제6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6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제65조 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제6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제6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68조 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제69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제7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70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71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제72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제73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제74조 사전준비
제75조 유해·위험요인파악
제76조 위험성추정
제77조 위험성결정
제78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제8장 보칙

제79조 무재해 운동

제80조 추진방법

제81조 무재해 목표

제82조 표창

제83조 징계

제84조 문서보존

제85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제86조 규정의 준수 등

제9장 부 칙

제87조 시행일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티씨케이(이하 "회사"라 한다)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회사의 재산 보존을 도모하며 생산 능력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 ① 이 규정은 전 임직원에게 적용하며 회사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에게도 적용한다.
- ② 이 규정은 회사에 적용되는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으며,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 3 조 (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6. "도급인"이란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한다.
 7. "수급인"이란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 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8. "관계수급인"이란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 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9.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10.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1.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산업안전보건법 (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 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조 (안전보건표지)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3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제 5 조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 예방 책임 및 의무)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1.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2. 원재료 등을 제조·수입하는 자

3. 건설물을 발주·설계·건설하는 자

② 근로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지켜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제 6 조 (도급의 승인)

- ①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장에서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중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 등이 있는 물질의 취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1. 중량비율 1퍼센트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또는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 ③ 법 제5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승인, 같은 조 제5항 또는 제6항(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연장승인 또는 변경승인 및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작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그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제 7 조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 ②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매월 1회 이상)
 2. 작업장 순회점검(2일에 1회 이상)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 ③ 제2항에 따른 도급인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분기에 1회 이상)
- ④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⑤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 ⑥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⑧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⑨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관계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 ⑩ 도급인은 법 제65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제 2 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그 직무

제 8 조 (조직의 구성)

회사는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을 위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대행)을 둔다.

제 9 조 (안전보건관리 체제)

[별표1 안전보건관리 체제]

제 10 조 (안전보건관계자 선임 등)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업주로 선임하고, 『별표 제2호 서식』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를 작성·보존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수여한다.
- ②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대행)는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유자격자로 선임하고 선임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1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과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하는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③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제 12 조 (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장 내 관리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감독
 5.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대행)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 가.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주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 13 조 (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3.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4.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5.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사업주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 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 14 조 (보건관리자)

- ①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 서 정한 업무
 -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5.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6.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시 행령 별표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 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8.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조언
 -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1.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 12.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 항
-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제 15조(안전보건전담조직)

① 안전보건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의무 총괄 관리사항

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관리·감독

나.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을 보좌

다.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및 총괄·관리

라.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배치

마. 안전·보건 관련 예산의 편성 및 집행관리

바.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 정책 수립

사.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평가 관리(1회/반기)

[별지2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평가·개선 점검표]

제 16 조 (작업지휘자)

① 사업주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해서 하는 작업

2. 중량물의 취급작업

다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에 대하여 작업장소에 다른 근로자가 접근할 수 없거나 한 대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운전하는 작업으로서 주위에 근로자가 없어 충돌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17 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사업주는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③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3. 보건관리자(대행)

4.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제 18 조 (회의 등)

- ① 법 제24조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근로자대표,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수 있다.

제 19 조 (심의사항)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 20 조 (회의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회의 개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제 21 조 (회의결과 등의 주지)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그룹웨어
2. 현장게시판 게시
3. 자체 조회 시 집합 교육에 의한 방법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 3 장 안전보건교육

제 22 조 (교육의 구분)

안전보건교육은 법 제29조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과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제 23 조 (교육계획수립)

안전관리자는 연간 교육계획서를 매년 12월중에 작성하여 사업주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 24 조 (정기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2.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로서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 가. 사무직 종사 근로자외의 근로자로서 판매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 나.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제 25 조 (채용시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 및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채용시 교육 : 8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 나.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 2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는 1시간 이상)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제 26 조 (특별안전보건교육)

-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써 위험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일용근로자 :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
- ②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③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근로자 중 특별교육대상작업에 6월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8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이직 후 1년 이내에 신규 채용되어 이직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2. 근로자가 동일 사업장내 다른 작업에 배치된 후 1년 이내에 배치 전과 동일한 특별교육대상작업에 종사하는 경우

제 27 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장에서 취급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시행규칙 별표 5에 해당되는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 시간만큼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게 된 경우
 2.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 도입된 경우
 3.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하는 경우에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그룹별로 분류하여 교육할 수 있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교육시간 및 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 28 조 (교육강사)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4. 보건관리자(대행)
5. 산업보건의
6.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7.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8.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 29 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 후 3개월 사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제 30 조 (교육주기)

제3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직위에 선임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안전보건에 관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 4 장 안전관리

제 31조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① 안전관리자는 매년 말 안전보건관리업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업무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하여 전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제 32 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 ①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 ③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3 조 (방호조치를 해야 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법 제8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영 별표 20에 따른 기계·기구를 말한다.

제 34 조 (방호조치)

- ①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영 제70조 및 영 별표 20의 기계·기구에 설치해야 할 방호장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20 제3호에 따른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2. 영 별표 20 제4호에 따른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3. 영 별표 20 제5호에 따른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4. 영 별표 20 제6호에 따른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 ② 법 제80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란 다음 각 호의 방호조치를 말한다.
 1. 작동 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부착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나 톱니바퀴 등 반대방향의 두 회전체에 물려 들어가는 위험점)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제 35 조 (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① 법 제80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그에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 해체 사유가 소멸된 경우: 방호조치를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할 것
- ② 사업주는 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 36 조 (안전검사)

- ①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검사 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소유자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안전검사의 신청, 검사 주기 및 검사합격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검사 주기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종류, 사용연한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 37 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

- ① 법 제9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리프트
 3. 압력용기
- ②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38 조 (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 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 리프트: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2년마다

2. 압력용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②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은 규칙 별표 16과 같다

제 39 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9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 40 조 (안전수칙)

회사내 작업간의 안전유지를 위해 관리감독자는 안전수칙을 제정하고 해당 작업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 해야 하며 해당 작업자는 이를 숙지, 준수 해야 한다.

제 41 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출입 제한에 관한 사항)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3.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4. 인화성 액체
5. 인화성 가스
6. 부식성 물질
7. 급성 독성 물질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장소에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장소에서 수리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그 암(arm) 등의 움직임에 의한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2. 유압, 체인 또는 로프 등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기계·기구의 덤프, 램(ram), 리프트, 포크(fork) 및 암 등이 갑자기 작동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3. 리프트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다음 각 목의 장소

가. 리프트 운반구가 오르내리다가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리프트의 권상용 와이어로프 내각측에 그 와이어로프가 통하고 있는 도르래 또는 그 부착부가 떨어져 나감으로써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4. 지게차·구내운반차·화물자동차 등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및 고소작업대의 포크·버킷(bucket)·암 또는 이들에 의하여 지탱되어 있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 다만, 구조상 갑작스러운 하강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5.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

6. 해체작업을 하는 장소

7. 하역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쌓아놓은 화물이 무너지거나 화물이 떨어져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

제 42 조 (중대재해 및 중대산업사고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에 관한 사항)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1 비상연락체계]

④ 관리감독자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 43 조 (안전보건표지·안전보건수칙의 종류 및 게시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별표3[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③ 안전보건수칙은 자사의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따른다.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제 5 장 보건관리

제 44 조 (일반건강진단)

-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45 조 (일반건강진단의 주기 등)

-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판매·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② 법 제129조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일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일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6 조 (특수건강진단 등)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3항 및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사업주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47 조 (특수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및 주기 등)

- ①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표 23에서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별로 정한 시기 및 주기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5조에 따른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해야 한다.
 -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 2. 특수건강진단, 법 제130조제3항에 따른 수시건강진단 또는 법 제131조제1항에 따른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3. 특수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은 근로자
- ③ 사업주는 법 제1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의 원인이 된 유해인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를 진단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 ④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할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시기를 안전보건관리규정 또는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등 특수건강진단이 정기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48 조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시기)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고, 특수건강진단기관에 해당 근로자가 담당할 업무나 배치하려는 작업장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등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

제 49 조 (수시건강진단 대상 근로자 등)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① 법 제130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로 인하여 해당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직업성 천식, 직업성 피부염, 그 밖에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직전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로부터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하지 않다는 소견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산업보건의,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건의한 근로자
2. 해당 근로자나 근로자대표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수시건강진단을 요청한 근로자

② 사업주는 제1항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시건강진단의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 50 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질병의 증상이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특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의 실시나 작업전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임시건강진단의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법 제131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또는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 여부, 질병에 걸렸는지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근로자 또는 같은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유사한 질병의 자각·타각 증상이 발생한 경우
2.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하거나 여러 명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 임시건강진단의 검사항목은 별표 24에 따른 특수건강진단의 검사항목 중 전부 또는 일부와 건강진단 담당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항목으로 한다.

⑤ 제4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임시건강진단의 검사방법, 실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 51 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사업주는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주는 법 제129조부터 법 제131조까지의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 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는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52 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법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 53 조 (건강진단 결과에 따른 사후관리 등)

- ①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132조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조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③ 법 제132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란 특수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의 결과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 금지 및 제한, 작업전환, 근로시간 단축,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이 있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6호서식의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에 건강진단 결과표,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실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실시 계획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⑤ 그 밖에 제4항에 따른 사후관리 조치결과 보고서 등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 54 조 (작업환경측정)

-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 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55 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 등)

- ① 법 제125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이란 별표 21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1호에 따른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그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2. 안전보건규칙 제420조제8호에 따른 임시 작업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단시간 작업을 하는 작업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안전보건규칙 제605조제2호에 따른 분진작업의 적용 제외 작업장(분진에 관한 작업환경측정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의 노출 수준이 노출기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장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② 안전보건진단기관이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작업장의 유해인자 전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업환경을 측정하였을 때에는 사업주는 법 제125조에 따라 해당 측정주기에 실시해야 할 해당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 56 조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

-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첨부하여 제1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료채취방법으로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법 제125조제5항 단서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에는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 결과표를 전자적 방법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료분석 및 평가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환경측정기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면 30일의 범위에서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초과한 작업공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시설·설비의 설치·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시료채취를 마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작업공정의 개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개선 계획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의 보고내용, 방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57 조 (작업환경측정 방법)

- ① 사업주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작업환경측정을 하기 전에 예비조사를 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 시료채취방법으로 하되, 개인 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 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할 것. 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83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④ 법 제125조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환경측정기관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에 공정별 작업내용, 화학물질의 사용실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등 작업환경측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

- ② 사업주는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작업공정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요구하면 제1항제1호에 따른 예비조사에 참석시켜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측정방법 외에 유해인자별 세부 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 58 조 (작업환경측정 주기 및 횟수)

- ① 사업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는 등으로 제186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하고, 그 후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해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은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그 측정일부터 3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측정을 해야 한다.
 1.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만 해당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21 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 인자(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은 제외한다)의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최근 1년간 작업공정에서 공정 설비의 변경, 작업방법의 변경, 설비의 이전, 사용 화학물질의 변경 등으로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화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은 그렇지 않다.
 1. 작업공정 내 소음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85데시벨(dB) 미만인 경우
 2. 작업공정 내 소음 외의 다른 모든 인자의 작업환경측정 결과가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인 경우

제 59 조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나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작업수칙을 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밸브·콧 등의 조작(관리대상 유해물질을 내보내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냉각장치, 가열장치, 교반장치 및 압축장치의 조작
3. 계측장치와 제어장치의 감시·조정
4. 안전밸브, 긴급 차단장치, 자동경보장치 및 그 밖의 안전장치의 조정
5. 뚜껑·플랜지·밸브 및 콧 등 접합부가 새는지 점검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6. 시료의 채취
7.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설비의 재가동 시 작업방법
8. 이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의 응급조치
9. 그 밖에 관리대상 유해물질이 새지 않도록 하는 조치

제 60 조 (보호구의 지급 등)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방한모·방한복·방한화·방한장갑
- ② 사업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 61 조 (보호구의 관리)

- ① 사업주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사업주는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 62 조 (전용 보호구 등)

사업주는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 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63 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법 제1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근로를 금지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신장·폐 등의 질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 ④ 사업주는 제3항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보건관리자(의사인 보건관리자만 해당한다),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6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 64 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①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되면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 65 조 (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사업주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해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제 66 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 67 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68 조 (재해 발생 시 처리절차)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해야 한다. 다만, 제73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의 사본을 보존하거나 제73조제5항에 따른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제 69 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주가 법률 제11882호 산업안전보건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4년 7월 1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처음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보고기한이 지난 후에 자진하여 별지 제30호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
2.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도급인
3.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 사업주
4. 산업재해 발생사실을 은폐하려고 한 사업주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조사표에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산업재해발생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요양급여의 신청을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공단으로부터 요양신청서 사본, 요양업무 관련 전산입력자료, 그 밖에 산업재해예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송부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 7 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 70 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71 조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 72 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 ①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조언하게 할 것
 3.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시행하게 할 것
 4.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보건관리자의 선임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 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 ③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보건진단(법 제47조)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2. 공정안전보고서(법 제44조). 다만,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 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 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안전보건규칙 제657조부터 제662조까지)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제 73 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20명 미만 사업장(총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제3호를 생략할 수 있다.

1.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3.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4.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의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제 74 조 (사전준비)

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시기 및 절차
4. 주지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보존

② 위험성평가는 과거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 위험한 일이 발생한 작업 등 근로자의 근로에 관계 되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것은 모두 위험성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업장 안전보건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위험성평가에 활용하여야 한다.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기구, 설비 등의 사양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기구, 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 75 조 (유해위험요인 파악)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할 때 업종, 규모 등 사업장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호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3.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4.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5.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 76 조 (위험성 추정)

① 사업주는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사업장 특성에 따라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 및 중대성의 크기를 추정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위험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1.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을 이용하여 조합하는 방법
2. 가능성과 중대성을 곱하는 방법
3. 가능성과 중대성을 더하는 방법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위험성을 추정할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부상 또는 질병의 대상자 및 내용을 명확하게 예측할 것
2.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큰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을 추정할 것
3. 부상 또는 질병의 중대성은 부상이나 질병 등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통의 척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본적으로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요양기간 또는 근로손실 일수 등을 척도로 사용할 것
4. 유해성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를 기초로 하여 유해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할 것
5. 기계·기구, 설비, 작업 등의 특성과 부상 또는 질병의 유형을 고려할 것

제 77 조 (위험성 결정)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 ① 사업주는 제11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추정 결과(제8조 단서에 따라 같은 조 제3호를 생략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파악결과를 말한다)와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기준(「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을 하기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해 두어야 한다.

제 78 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① 사업주는 제12조에 따라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크기,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 및 다음 각 호의 순서를 고려하여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과 그 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여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용 보호구의 사용
- ②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의 크기가 사전에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범위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위험성이 자체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의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야 한다.
- ④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종료한 후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 8 장 보 칙

제 79 조 (무재해 운동)

사업주는 전 직원이 참여하는 통합된 노력으로 무재해를 달성,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하기 위하여 무재해 운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80 조 (추진방법)

안전관리자는 회사 전 직원이 보기 쉬운 장소에 무재해 기록판을 설치하고 무재해 기를 게양하여야 한다.

제 81 조 (무재해 목표)

회사의 무재해 목표는 매년 1월 1일을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의 무재해 1년(365일)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 82 조 (표창)

- ① 안전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직원에 대해서 월례조회 시 표창하여 시상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동기를 유발토록 한다.
- ② 표창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안전 이벤트 수상자.
 2. 위험성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사람

제 83조 (징계)

- ① 사업주는 법과 법이 정한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직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징계 요구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관리상의 지시, 명령에 위반하거나 불복한 직원
 2. 각종 사고 및 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 시킨 직원
 3. 기타 관리감독자 및 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직원

제 84 조 (문서보존)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과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제24조제3항 및 제75조제4항에 따른 회의록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제57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 기록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5. 제108조제1항 본문 및 제10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제125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 ② 안전인증 또는 안전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안전인증기관 또는 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안전검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제84조제5항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에 대하여 기록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고, 제98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실시한 검사 결과에 대한 서류를 2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일반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한 해체·제거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하고, 기관석면조사를 한 건축물·설비소유주등과 석면조사기관은 그 결과에 관한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지도사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⑥ 석면해체·제거업자는 제122조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서류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 ⑧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88조에 따른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보존(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보존을 포함한다)기간을 5년으로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에 대한 기록이 포함된 서류는 그 보존기간을 30년으로 한다.
 - ⑨ 법 제16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는 제209조제3항에 따라 송부 받은 건강진단 결과표 및 법 제133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의 서류 또는 전산입력 자료는 30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⑩ 법 제164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제10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신청서(첨부서류를 포함한다) 및 제110조에 따른 심사와 관련하여 인증기관이 작성한 서류
 2. 제124조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서 및 검사와 관련하여 안전검사기관이 작성한 서류
 - ⑪ 법 제164조제4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1. 측정 대상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측정 연월일
 3. 측정을 한 사람의 성명
 4. 측정방법 및 측정 결과
 5.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한 경우에는 분석자·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등 분석과 관련된 사항
- ⑫ 법 제164조제5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의뢰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및 주소
2. 의뢰를 받은 연월일
3. 실시항목
4. 의뢰자로부터 받은 보수액

⑬ 법 제164조제6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2.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등을 말한다)
3. 작업의 내용 및 작업기간

제 85 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이 규정의 제정 및 개정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86 조 (규정의 준수 등)

- ① 회사 내 모든 임직원은 이 규정을 지켜야 한다.
- ② 사업주는 규정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전 직원이 알게 하여야 한다.
- ③ 이 규정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근로기준법」의 취업규칙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제 9 장 부 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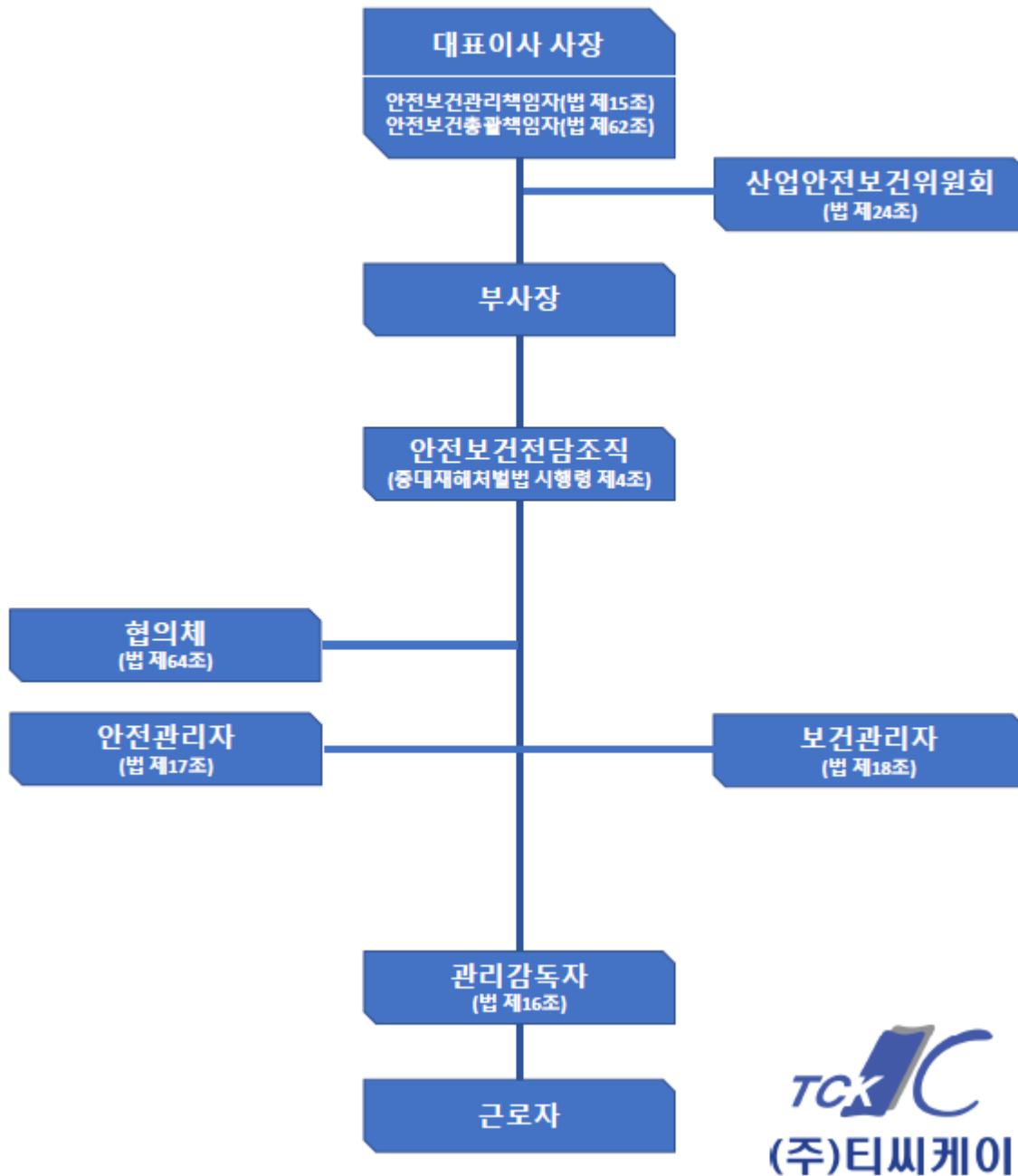
제 87 조 (시행일)

0. 이 규정은 1996년 10월 01일부터 제정·시행한다.
1. 이 규정은 2012년 01월 26일부터 개정·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4년 08월 0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15년 05월 0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5. 이 규정은 2018년 07월 09일부터 개정·시행한다
6. 이 규정은 2019년 08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7. 이 규정은 2020년 01월 16일부터 개정·시행한다
8. 이 규정은 2022년 07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별표1[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관리 체제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별표2[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의거하여

TCK사업장 내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아래의 업무를 수행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주)티씨케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 장 김 영 희

2020년 12월 29일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별표3[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제6조제1항 관련)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경고	202 산화성물질경고	203 폭발성물질경고
						
	205 부식성물질경고	206 방사성물질경고		208 매몰된물체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독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9 안전복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4. 안전표지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비상구	408 우측비상구	5. 관계자외 출입금지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관계자외 출입 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외 출입 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외 출입 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6. 추가 시 문 자 예 시 문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들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방심과 불안정한 행동이 조국의 번영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별지1[비상연락체계]

비 상 연 락 체 계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별지2[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평가·개선 점검표]

안전보건 의무 이행점검 및 평가·개선 점검표				
○ 기관명 :		점검일자 : 20 년 월 일		
1. 목표와 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o안전보건 계획에 따른 이행 (실시시기, 지표 등에 따라 평가)				
o경영방침에 따른 이행				
2. 안전보건총괄(관리)책임자 등 안전보건업무 충실 이행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o안전보건총괄책임자(도급 등 업무 시) - 도급 등 업무의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 도급사업 업무 총괄				
o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o관리감독자 - 지휘·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 점검 - 작업장 정리·정돈 등				
o안전관리자(위탁 시 안전관리 전문기관)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적격품 선정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분석, 재발방지 보좌, 지도·조언 등				
o보건관리자 -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적격품 선정 -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비치 보좌 및 지도·조언 - 산업재해 발생 원인조사·분석, 재발방지 보좌, 지도·조언 등				
o산업보건의 - 건강진단 결과 검토 및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전환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 - 근로자 건강장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등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3.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위험성평가)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o 내부 절차에 따른 실시 - 위험성평가 방법 - 위험성평가 참여자 -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 공지 - 기타				
o 실시 시기 및 대상의 적정성 - 정기평가: 매년(계획에 따른 시기), 전체 작업 대상 - 수시평가: 아래 계획 실행 전 <수시평가 대상>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본부 전담조직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o 실시 방법의 적정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실시 총괄·관리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보좌 - 관리감독자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평가 실시를 위한 교육 등				
o 유해·위험요인 파악의 적정성 - 현장 점검을 통해 위험성평가에 유해·위험요인 파악 누락이 없는지 확인				
o 유해·위험요인 개선 수준 - 현장 점검을 통해 적정 개선여부 확인				

4. 종사자 참여 활성화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o 내부 절차 운영 기반 - 익명 신고함 설치 상태 - 내부 직원에 참여절차 안내				
o 제안제도 운영 - 종사자(도급·용역·위탁 포함)에 안내 - 주기적 제안내용 확인 및 적절한 조치				
o 아차사고 발굴 제도 운영 - 종사자(도급·용역·위탁 포함)에 안내 - 주기적 내용 확인 및 적절한 조치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5.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관리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o수행한 도급·용역·위탁 업무 기록·관리				
o도급·용역·위탁 계약 단계에서 수급인 선정, 적정기간 기준 준수				
o도급·용역·위탁 수행 단계에서 안전보건활동 -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협의체 구성·운영, 순회점검 - 적정기간 보장 등				
o도급·용역·위탁 완료 후 안전보건수준 평가(평가결과 환류)				

6. 재해발생 및 급박한 위험대비 신속 대응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o대응조직 구성 및 업무분장 여부				
o비상조치계획에 급박한 위험, 중대재해 및 비상상황 발생별로 구분하여 수립				
o비상조치계획에 소속기관 근무환경 상 위험성이 높은 위험요인에 대해 재해 발생 시나리오 작성				
o비상조치계획에는 필요한 인력 및 시설·장비(인적·물적 자원)가 적절히 포함				
o비상조치계획에 작업중지·근로자 대피·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재해자 구조조치, 추가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				
o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이 적절히 구분				
o비상 시 즉각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가 충분히 마련되었고, 즉각 알아볼 수 있는 형태로 표시				
o비상상황에 대비한 병원,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마련				
o훈련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을 검토 및 개선				

7. 안전보건 교육 실시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o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o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실시				
o안전보건관리체계(내부 절차·기준·매뉴얼) 교육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8.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법령 이행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 관리체제	○안전보건총괄(관리),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선임 및 위촉				
	○관리감독자 안전보건 업무 부여 등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및 변경				
산업재해발생 보고 및 기록관리, 법령 고지 등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여부(산재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제출)				
	○법령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 게시				
	○안전보건표지 설치 및 부착				
도급에 따른 산재예방 조치	○도급인 및 수급인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매월 1회 이상 정적으로 회의 개최)				
	○도급 작업장 순회점검(1회/주)				
	○작업장 합동 안전·보건점검(1회/분기) *도급인 및 관계수급인 사업주와 근로자 각 1명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수급업체 위생 시설 설치 또는 이용				
건설업 등 산업 재해 예방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기본 안전보건대장 수립 및 이행 확인) * 50억원 이상				
	○안전보건조정자 선임 *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50억원 이상)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방호조치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 사용 시 안전인증 취득 여부 *크레인, 고소작업대, 압력용기, 보호구(안전화, 안 전모 등) 등				
	○유해위험기계 등 안전검사 실시 *크레인, 압력용기 등				
유 해 위 험 물 질 에 대한 조치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경고표지 부착·교육 실시				
	○석면함유 물질 자재에 대한 석면조사				
	○석면함유 물질 자재 해체제거작업 준수 (석면해체제거업자 도급 여부)				
근로자 보건관리	○작업환경 측정 및 일반·특수건강진단				

	규 정 명	안전보건관리규정	제개정일	2022.07.20
	규정코드	TCK-J-1	Rev No.	8

항목		점검결과			개선사항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기준	○작업장 및 통로 전도방지 조치 여부 * 미끄럼방지 조치(논슬림테이프 부착) 설치, 바닥 청결, 조도확보 등				
	○안전한 사다리 통로 확보 * 견고한 구조, 전도방지 조치,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이상 등				
	○추락위험장소 안전난간 및 덮개 등 설치 여부				
	○높은 곳 작업 시 작업발판 설치 여부 - 비계 설치 후 작업발판 조립, 이동식비계, 말비계 사용				
	○승강기 보수 작업 등 * 방호장치(출입문 인터록 장치 등) 정상 작동, 작업 시 전원 차단 후 잠금장치/포지판 부착 후 작업				
	○밀폐공간 위험작업 보건관리 * 사전허가(프로그램 작성), 출입금지 표지판, 농도측정, 환기, 송기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감시인배치 등				
	○외벽 청소업무 * 작업전 로프, 고리, 달비계 등 체결상태 확인, 로프 외 구명줄 설치 후 안전대 체결, 로프 및 구명줄				
	○추락 등 위험작업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여부				
	○위험기계 등의 전동기 회전체 등에 덮개 설치 여부				
	○전동기 콘센트 등 접지 연결 여부				
기타 안전보건관계 법령	기타 안전보건관련 사항				
점검일자		. . .		점검자	
		. . .			